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3건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산업체의 외국인 임직원 채용시 사전승인 필요 등〉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47호)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330호)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1331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검토 방향	5
2.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시 사전승인 필요	6
3.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승인 절차	13
4.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관리 계획서 작성의무(백선희의원안) ..	17
5.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밀정보 접근 제한(백선희의원안)	23
※ 참고자료: 방산업체 지정 현황(84개)	26

I. 제안경위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2025. 6. 16.

다. 회부연월일: 2025. 6. 17.

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2025. 7. 8.

다. 회부연월일: 2025. 7. 9.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2025. 7. 8.

다. 회부연월일: 2025.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 이 법률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검토 방향

□ 최근 방산업체에 외국인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외국인 직원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우려와 함께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

□ 이와 관련 안규백의원과 백선희의원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방산업체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임원·직원 선임·채용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음.

이에 더하여 백선희의원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방산업체에 외국인 관리 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기밀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하에서는 두 개정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외국인 선임 승인의 적정성과 외국인 관리 계획서 작성의무 등에 관하여 차례대로 검토함.

2.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시 사전승인 필요

□ 개정안들은 방위산업기술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¹⁾를 임·직원으로 선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안규백의원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백선희의원안)
제13조의3(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의 승인) ① 방위산 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의 방위산업체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을 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경 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 채용 등 의 승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 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 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 또는 직원 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

- 1)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안규백의원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백선희의원안)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임·직원 선임 또는 채용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안규백의원안과 백선희의원안이 발의되었고, 두 개정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의 근거를, 안규백의원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백선희의원안은 「방위사업법」에서 각각 마련하고 있음.

나아가 백선회의원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외국인 등 관리 계획서 작성의무 등을 부가하고 있음.

승인의 목적으로, 안규백의원안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이고, 백선회의원안은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임.

승인의 대상으로, 안규백의원안은 ‘외국인 임원의 선임’으로 한정된 반면, 백선회의원안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직원의 선임·채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외국인 임원 등 선임시 승인 관련 두 개정안 비교]

구분	안규백의원안	백선회의원안
근거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법」
승인의 목적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승인의 대상	외국인 임원의 선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직원의 선임·채용

- ☐ 현행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등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외국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

다만, 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일정한 시설 기준과 보안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방산업체에 내·외국인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

□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84개의 방산업체가 지정³⁾되어 있는데, 이 중 외국인 임원 선임은 1개 업체에 1명⁴⁾이고 외국인 직원 채용은 23개 업체에 124명임.

□ 개정안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함.

2)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 ~ 9. (생략)

3) 참고자료: 방산업체 지정 현황(84개)

4) 2025년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표이사로 미국인이 선임됨.

□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와 방산업체의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수정 논의가 필요함.

첫째, 승인의 근거 법률로 「방위사업법」 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중 어느 법률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임.

「방위사업법」 제35조에서는 보안요건 등을 고려한 방산업체 지정 및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0조의2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방산업체가 전략무기사업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의 내용을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봄.

둘째, 승인의 대상에 외국인 직원 및 복수국적자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임.

먼저, 외국인 직원 채용의 경우 동 승인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원도 승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외국인 채용에 따른 보안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방산업체의 직원 채용까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면 방산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원 선임’에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임원 선임에 한정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방위사업법」 제35조 및 제36조 방산업체 지정 및 취소, 「방위사업법 시행령」상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⁵⁾ 개정안의 취지인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의 위험성은 여전하므로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5)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셋째, 승인의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 또는 ‘국방과학기술’ 유출방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⁶⁾은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과학기술⁷⁾ 중에서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술로서, 현재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를 통해 8대 분야 128개의 기술이 지정·관리되고 있음.⁸⁾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함.

이와 같이 국방과학기술이 방위산업기술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그 범위 획정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방위산업기술은 엄격한 지정 제도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원 선임 승인의 필요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금지’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봄.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3.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승인 절차

- 개정안들은 방산업체로부터 외국인 임원·직원의 선임·채용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그 승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안규백의원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백선희의원안)
제13조의3(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의 승인) ① (생략)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 채용 등의 승인) ① (생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임·직원 선임 또는 채용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의 승인 여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검토 기한을 30일로 설정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조직 구성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30일의 기한 설정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현재 방산업체 외국인 신원조사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근거하여 업체 대표의 요청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는데, 신원조사 업무에 필요한 기간 보장을 위해 검토기한을 6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61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① 국군방첩사령관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 종사자, 국방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계약에 의한 제조, 납품, 공사 등 방산관련 용역업무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타 방위력개선사업 참가자 등 군사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업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를 한다

② 방산업체 대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소 20일(근무일 기준) 전에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방산물자의 생산, 관리분야 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예정자, 암호 취급자
3. 방산관련 임직원(2인 이상의 공동대표 및 임원 포함) 및 국방과학기술 용역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자
4. ~ 8. (생략)

③ ~ ⑤ (생략)

⑥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대표는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보안취약인원)에 대해서 필요한 보안대책(방산분야 종사 제한, 방산관련 비밀·기술 취급 통제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신원조사에 관한 제반업무는 국군방첩사령관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62조(신원조사 요청절차) ① 업체 대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회보요청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조사목적, 최근 신원조사 일자(연번) 등을 명시하여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를 요청한 업체대표는 신원조사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신원조사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신원조사의 결과 처리) ① 국군방첩사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 서식 신원조사 회보서에 의한 별지 제18호의 서식 신원조사 회보서(약식)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방첩사령관은 첨부서류 미제출 등의 이유로 신원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제한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 여부 검토 및 통보기한을 늘릴 경우 방산업체의 경영권 안정화가 그만큼 늦어짐에 따라 방산업체의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심화될 수 있음.

현재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으로 운영되는 신원조사 대상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방산업체 종사자, 방위력개선사업 참가자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 업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음.

그러나 현재 84개의 방산업체에 단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개정안의 승인 대상을 ‘임원 선임’으로 한정할 경우 업무처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30일의 통보기한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봄.

4.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관리 계획서 작성의무(백선희의원안)

□ 개정안은 대상기관⁹⁾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임원·직원으로 선임·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 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그리고 관리 계획서에는 외국인이 취급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접근 보안통제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백선회의원안)
<신 설>	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50조의3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백선회의원안)
	<u>및 접근 제한 방안</u>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24조(과태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 체계¹⁰⁾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는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방산업체가 종사하는 인원에게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국방부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등 11)에 근거하여 방산업체의 외국인에 대한 보안대책 조치를 시행중이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고, 관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이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안 제13조의3제1항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계획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나머지 관리계획서의 내용 등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1)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방위사업청훈령)

제21조(외국인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국인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하는 때(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해외 사무소도 같다)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목적, 기간,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원 확인 결과 및 방산기술 보호대책 등이 포함된 외국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기술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12조(외국인 고용 시 보안대책) ① 방산업체 대표는 외국인을 방산분야에 고용(장기 출입, 상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방산업체 대표 등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 8. (생략)

□ 그러나 관리 계획서 및 계획이행 의무를 법률에 규정한다고 전제하면 관리 계획서의 작성의무 등은 대상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대상기관이 자신의 권리·의무가 어떠한 범위에서 규율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헌법상 법률유보원칙¹²⁾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관리 계획서의 내용 등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12) 법률유보(法律留保)의 기능은 행정권의 행사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를 통해 나타남. 법률유보의 기능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민주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5.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밀정보 접근 제한(백선회의원안)

□ 개정안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방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백선회의원안)
<신 설>	제13조의4(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밀정보 접근 제한) 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 방위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할 수 없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0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방위산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 등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백선희의원안)
제21조(벌칙)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⑦ (생략)	을 통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임원의 임면 등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취급·관리를 제한하기 위한 세부기준, 절차 및 예외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방산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 등을 통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 영향력 행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적·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의 ‘사실상 경영권 행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등 적용요건 규정이 모호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군사기밀이 아닌 방산기술의 분리 등에도 어려움이 있음.¹³⁾

둘째, 이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금지)를 통해 누구든지 유출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음.¹⁴⁾

문 의 처
02)6788-5312

13) 경찰청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함.

14)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 외에 개정안의 별도 신설은 입법효과가 크지 않고 과도한 규제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자료: 방산업체 지정 현황(84개)

주요방산업체(67개)	일반방산업체(17개)
기아(주), 한화오션(주), (주)대한항공, 두산에너지리티(주), (주)세아항공방산소재, 코오롱스페이스웍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시스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현대로템(주), 현대위아(주), 현대트랜시스(주), 효성중공업(주), HD현대인프라코어(주), HD현대중공업(주), LS엠트론(주), SG생활안전(주), SK오션플랜트(주), (주)강남, 대양전기공업(주), 두원중공업(주), (주)MNC솔루션, 퍼스텍(주), 평화산업(주), (주)풍산, (주)풍산FNS, 한국특수전지(주), (주)스페이스프로, 한일단조공업(주), (주)한컴라이프케어, (주)휴니드테크놀로지스, (주)HJ중공업, LIG넥스원(주), SNT모티브(주), SNT다이내믹스(주), STX엔진(주), 다산기공(주), (주)다원프릭션, 단암시스템즈(주), (주)대영에스텍, 덕산넵코어스(주), (주)테크카본, (주)동인광학, (주)비츠로밀텍, (주)빅텍, (주)삼양정밀화학, (주)삼양컴텍, 삼양화학공업(주), (주)삼정터빈(주), (주)삼주기업, (주)시공사, (주)쎌트렉아이, (주)씨앤지, (주)아이팩, (주)에이치케이씨, 연합정밀(주), (주)우경광학, (주)우리별, (주)유텍, (주)이오시스템, (주)지티앤비, (주)케스,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주)현대제이콤, SG솔루션(주), (주)삼정티비엠, (주)에비오시스템테크놀로지스	(주)진영정기, 고려화공(주), (주)동양정공, (주)광림, 신정개발특장차(주), (주)성진테크윈, (주)유아이헬리콥터, 화인정밀(주), (주)스펙코, 삼영이앤씨(주), 아이쓰리시스템(주), 인소팩(주), 이화전기공업(주), (주)미래엠텍, (주)티에스텍, (주)대명, 대신금속(주)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